

백인대장신정중등관 학원 교습비등 게시표(제8조 관련)

2025년 12월 13일 현재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2024년 12월 19일

() 학원설립운영자[() 교습소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] : (주)백인대장 (서명 또는 인)

- 주: 1. 게시표와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
2. 모든 교습과정, 교습과목, 반에 대한 교습비등을 기재합니다.
3. 게시는 학원·교습소의 내부 및 외부(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장소의 내부)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
4. 기타경비 항목: 모의고사비, 재료비, 피복비, 급식비, 기숙사비, 차량비